

# 서울특별시 강서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8년 11월 28일  
도시건설위원회

## 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 2018 - 68 호
- 제안자 : 송영섭 의원 외 9명
- 제안일자 : 2018년 10월 31일
-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- 상정일자 : 제26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4차(11월 28일) 회의 심사

## 2. 개정이유

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객관성·전문성·투명성을 강화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은 조문은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'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심의 위원 위촉 시 이해관계자의 참여 배제 규정 마련 (안 제3조)
- 나. 심의 안전에 대한 심의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 마련 (안 제4조의2)
- 다.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'에 따라 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 (안 제2조제1항제1호~제2호, 제2조제2항제3호, 제3조제2항제2호, 제9조제2항~제3항, 제10조제1항)

라. 당연직 공무원 명칭을 업무 중심으로 변경하여 용어의 신축성 도모  
(안 제3조제3항, 제8조제1항)

##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6조의2 제1항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의사항 : 해당사항 없음

라. 입법예고(2018. 10. 31. ~ 2018. 11. 5.) 결과 : 의견 없음

#### 5. 검토의견(전문위원)

○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 과 운영에 객관성·전문성·투명성을 확보하여 내실 있고 공정한 위원회가 되도록 하기위해 심의위원의 이해관계자 참여 배제, 변호사 및 교통 업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, 위원의 제척·회피 규정을 마련하고 일부 조문을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'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.

○ 주요 개정 내용

- 안 제3조 : 위원 중 직능단체, 소비자보호단체 및 시민단체 임직원을 삭제하고 변호사 및 교통 업무에 경험이 있는 심의 위원을 위촉하여 전문성 강화.

- 안 제4조의2 : 위원의 제척·회피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공정성 확보
- 안 제2조부터 제10조 : 법제처의 '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'에 따라  
띄어쓰기 등 조문 정비.
- 안 제3조제3항, 제8조제1항 : 행정조직 개편에 따라 조례를  
개정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연직 공무원의  
명칭을 업무 중심으로 변경.
- 본 조례 개정안은 교통민원신고심의회의 안전심의에 대한 객관성·  
전문성·공정성을 강화하여 교통신고심의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 
기하고 어문 규정에 맞지 않는 조문은 법제처의 '알기 쉬운  
법령 정비기준'에 맞춰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 신설조항 등  
제반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.

## **6. 토론요지 : 생략**

## **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**

붙임 관계법령 1부.

## 관계 법령

#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**제116조의2(자문기관의 설치 등)**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09. 4. 1.]